

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학교내에 자율적,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됨.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전년도에,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건수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경우는 총 2,357건에 12억 7천 3백만원이며,

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2건임.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대부분 교육감이 되나 그 진행과정에서 해당 교직원의 어려움이 매우 크며, 교직원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소송 수행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됨.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동 위원회가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설치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음 때문에 사실상 큰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동 조례는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교육부에서 시달해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위원회 성격상 위원들이 분쟁 조정과정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비밀 등을 알게 된 경우가 있는바, 안 제5조의 위원회 의무 중 동 위원회의 위원들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가. 수정이유 :
 - 위원회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조항을 신설

나. 주요골자 :

- 위원수 5명을 7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의료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3조제2항)
-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의료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원과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가 서울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에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의료 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등) ①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

<p>고할 수 있다.</p> <p>제10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p> <p>제11조(교육청의 지원)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회 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2조(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p> <p>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동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p> <p>③(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제3조의 구성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조직의 독립성 확보 건의안</p> <p>가. 관련법령 개정</p> <p>□소방관도 공무원인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대우로 사기를 꺾어서는 아니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유사직종인 군인 또는 경찰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p> <p>○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개정 군인과 경찰은 전투·교육·훈련이나 사무실 등 직무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소방관은</p>	<p>화재·구급·구조현장에서 사망하여야만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중의 사망·상이도 보훈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p> <p>○ 국립묘지령 개정 순직 후에도 군인 또는 경찰은 당연히 국립묘지안장 대상이나 소방관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사망한 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고, 교육·훈련 등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어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p> <p>○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군인 또는 경찰은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도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고, 국·공립병원에 화상 등 특수진료과목이 없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치료비만 보상받고, 화상·후유증 등 성형외과적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화재진화시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화상 등 전문진료과목이 설치된 일반종합병원을 소방공무원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p> <p>나. 승진·보수·근무여건 개선</p> <p>○ 승진 불이익 일반행정직은 승진정체현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수당을 더 받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최저 승진소요 근무년수를 미적용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명예퇴직할 경우 최저 근무년수의 2/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p> <p>○ 보수 및 수당의 차별 보수에 있어서 순경, 소방사 각 3호봉 기준을 비교할 때 경찰직은 월 162만 3천원이고, 소방직은 월 143만 3천원으로 19만원이 부족합니다. 수당 역시 경찰관은 위험수당 2만원, 치안수당 17만원 등 39만원이나, 소방관은 위험수당 2만원, 화재진화수당 8만원 등 모두 20만원으로 19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p>
---	--